

「식품위생법」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 제3조(식품 등의 취급) 위반으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(과태료)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20% 감경 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12일

파 주 시



- 제 목: 「식품위생법」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: 2026. 10. 12. ~ 2026. 10. 30.
- 법적근거: 「식품위생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제101조
- 공고대상

업소명 (업 종)	대표자	소재지	처분사유	처분할 내용
1988 포장마차 (일반음식점)	이지아	파주시 탄현면 약산로 59, 1층	「식품위생법」 제3조(식품 등의 취급) 위반	과태료 부과 50만원 <i>*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 40만원</i>

5. 고지사항

-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6. 10. 30.(금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
바라며,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본 부과
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- 처분에 이의가 없어 의견 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, 파주시청
위생과에서 20% 감경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
- 문의사항: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(☎ 031-940-851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